

1)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및 활성화

□ (현행) 로보어드바이저를 지향하는 전문 자문사가 다수 진입을 희망하고 있으나, 현행 오프라인을 전제로 하는 자문업 규제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로보어드바이저 출현이 불가능

① (온라인 계약 불허) 대면계약 체결을 의무화*하여,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온라인 전문회사의 출현을 사실상 제한

* 계약 체결시 상품설명서 성격의 서면자료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, 전자문서·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 불가

② (전문 자문인력 의무화) 자문인력이 아닌 자의 자문 제공을 금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문은 불가능

□ (개선) 온라인·로보 특성에 맞게 자문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

① (온라인 계약 허용) 대면계약 체결의무를 완화하되, 계약의 주요내용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* 마련

* 전자적 방식의 교부 및 중요사항에 대해 직접입력 등

② (로보자문 허용) 유효성·적합성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*에 대하여는 전문인력을 대체하여 자문서비스 제공 허용 추진

* 다만, 단순표준화된 프로그램 난립으로 개인별 맞춤형 자문서비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로보어드바이저 등록단계에서 전산설비의 적정성 등 점검

